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철강 및 파생제품의 품목번호 분석

[품목분류 동향]

한국 HSK와 미국 HTSUS 비교 해설 및 연계표
(17p)

[오피니언, 미국]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전면 전자화’ 2월 6일로 바뀐 미 CBP 관세 환급 방식
(12p)

[이주의 초점]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주요 지원사업 정리 (4p)

[위클리 뉴스]

관세청, 할당관세 약용 ‘보세구역 반출지연·부정추천
업체’ 집중단속

EU CBAM 대상 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7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2월 16일(통권 제2167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168호는 3월 2일 발간됩니다.

▲2월 23일 : 휴간, ▲3월 2일 : 제2168호, ▲3월 9일 : 제2169호

이주의 초점

- 04**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07 Weekly News

오피니언

- 12** 시선, 미국 통관
앤드류 박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전면 전자화’ 2월 6일로 바뀐 미 CBP
관세 환급 방식

관세행정실무해설

- 15** 질의응답사례
수리 목적의 부분품 수입 시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품목분류동향

- 17**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철강 및 파생제품 -
- 64** 세번 바로잡기
석회암을 채취해 가공한 인조 자갈의 HS Code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배출량 산정부터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 탄소 비용 관리가 수출판도 좌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총 15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배출량 감축 투자 촉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EU의 이번 제도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통상·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이러한 정부 지원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AI 생성 이미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세부 지원계획을 종합·정리했다. 이번 계획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 탄소배출 감축,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디지털 솔루션 보급, 사전 검증 지원이 추진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돼 탄소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의 CBAM 배출량 산정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탄소배출량 자동산정 및 실시간 관리(MRV) 솔루션 보급, 한국에너지공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이 마련됐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맞춤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사전 검증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탄소배출 감축 지원도 확대된다.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을 줄일수록 CBAM 부담이 감소하고 수출 계약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설비 투자 지원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당 최대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투자비를 지원한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되고, 2029년부터 CBAM 확대 적용이 예정된 세탁기, 자동차부품, 냉장고, 건조기 등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최종재(Down stream) 제품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가 개최된다. 탄소배출량 산정 등 실습 중심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돼 기업 내부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대응체계 내재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제도 시행 단계별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CBAM은 올해부터 제도 적용이 시작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 관련 제3자 기관 검증, 탄소 비용 납부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 신규 수요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처 간 협력과 기업 체감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제도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EU 측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관세청은 지난 10일 EU 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의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EU의 품목분류 기준 CN 코드와 우리나라의 HSK 코드를 일대일로 매칭한 것이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산업 경쟁력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지원 패키지는 국내 기업이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탄소 비용 현실화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의 대응 속도와 투자 수준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BAM으로 인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 탄소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대응 역량 강화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EU CBAM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 지원(100개 사업장)	한국환경공단	3월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EU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 및 실시간 관리(MRV) 솔루션 보급(20여 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월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CBAM 배출량 산정을 포함한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배출량 확인서 발급 지원(40여 개사)	한국에너지공단	4월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보급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전 기업 대상 무료 보급)	한국원산지정보원	미정
글로벌 환경규제 현장진단 및 내재화 컨설팅 사업	환경규제 대상기업 여부 확인 등 진단(50개사)→CBAM 내재배출량 산정, 탄소데이터 관리·보고체계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0개사)	한국무역협회	(진단) 3월 (컨설팅) 5월
긴급지원바우처: 유럽 통상 애로 특화서비스	배출량 산정 및 사전 검증 비용 보조(보조율: 중견 50%, 중소 70%, 바우처 발급한도: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차 모집 완료, 연중 추가 모집

● 탄소배출 감축 지원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컨소시엄 주관사의 협력사에 탄소감축 기술·설비·시설 도입 비용 지원(컨소시엄별 최대 50억원, 2026년 10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3.6.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 지원(경매방식을 통한 효율적 감축프로젝트 발굴)(기업별 최대 50억원, 2026년 250억원)	한국에너지공단	1.21~2.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 패키지 지원(업체별 최대 3억원, 2026년 191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월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용 보조(업체별 최대 100억원,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2026년 1,338억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1차 공모 완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기업별 최대 10억원, 2026년 741억원)	한국환경공단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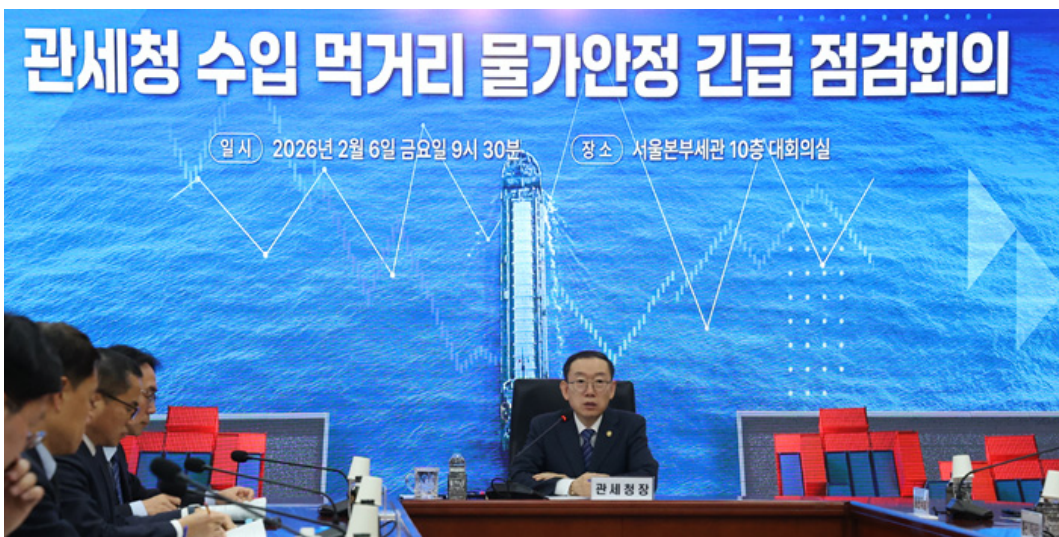
●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EU CBAM 대응 합동 설명회	EU CBAM 대응방법에 관한 집합교육 제공(5시간, 4회, 회차별 200~300명 내외)	관계부처 유관기관	3, 6, 9, 12월 (잠정)
CBAM 아카데미	CBAM 대응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실습 교육 프로그램 제공(4시간, 8회, 회차별 30명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10월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CBAM 등 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기초(14시간, 10회, 총 200명), 심화(28시간, 10회, 총 200명)]	한국환경공단	~4월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헬프데스크 상담인력을 활용,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제공(5회, 회차별 20명)	한국환경공단	5월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악용 차단 “보세구역 반출지연·부정추천 업체 집중단속”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특별 단속과 고강도 수사까지 예고하면서, 수입 단계부터 물가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관세청은 2월 6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자료(2026년 1월 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가격은 54.6% 급등했고, 설탕은 24.7%, 건조 고사리는 23.4%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추천 자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면서 정책 효과를 왜곡해왔다는 것이 관세청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하고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의 일환으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111건, 1억 6,000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

하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해,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반출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 물품도 반출을 독려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실시해, 할당세율을 추천·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내에 시중유통) 경과 후 반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부정·불공정 유통행위 차단 과정에서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추천을 받아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

(단위: 건)

구분	미표시	부적정 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허위표시	기타	합계
시정조치	1,808	242	48	2	39	11	2,150
검찰송치	-	-	4	2	6	-	12
합계	1,808	242	52	4	45	11	2,162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물가관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해, 국민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원유 등 87개 품목에서 아보카도, 인스턴트 카레, 캐슈넛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9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매주 분석·선정해 소관부처에 제공,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을 선별해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은 고강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넘길 경우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관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세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통관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9일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

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약정 체결로 수산물 수입으로는 호주, 필리핀, 페루에 이어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넵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 4,000여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서준식 기자 |

EU CBAM 대상 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연계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가 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해당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 코드(8자리)와 한국의 HSK 코드(10자리)를 일대일로 매칭한 자료로, 기업들이 규제 대상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기존 6대 품목에 더해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최종재(Down Stream) 제품까지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내연기관과 산업용 기계류, 화물자동차 등 산업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정용 제품까지 포함돼 총 180개 품목이 추가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승용차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되며, 중고차는 제외되고 신제품만 적용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차종과 무관하게 새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다수 지정됐다.

산업기계 및 전기기기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버너 등 주요 산업 설비와 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하역 기계 및 관련 부품이 포함됐다. 전기기기는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가전 분야에서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이 아닌 1회 건조 용량 10kg 이하의 가정용 제품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연계표 'ex-' 표기)은 제품군 전체가 아니라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해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는 등 세부 적용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동유럽 물류 허브 구축 나선 해수부, 폴란드 물류센터 투자 지원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작 방식으로 동유럽 물류거점을 최초로 확보했다. 해수부는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카토비체는 폴란드 최대 산업지대인 실레시아주의 중심지로, 독일·체코 등 인접 국가와의 연결성이 뛰어난 전략적 거점이다. 특히 그단스크항과 약 500km 이내에 위치해 동유럽 내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과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으로 구성된 K-협업체(컨소시엄)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물류거점 확보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이행의 일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 40개소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서준식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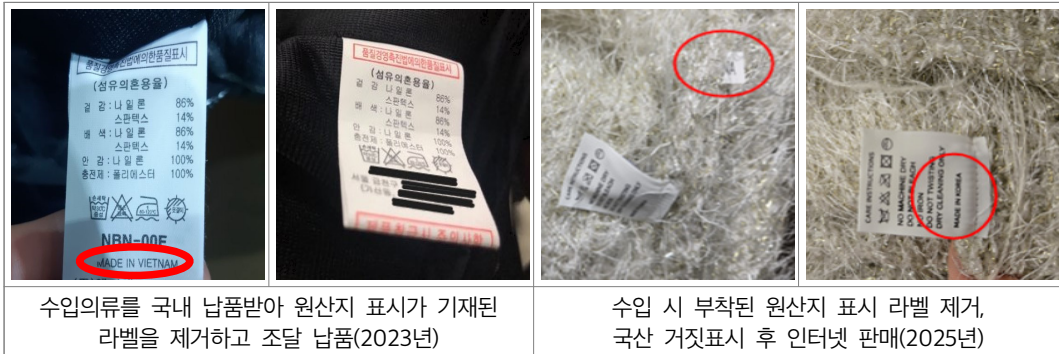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기만과 국내 의류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단속은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불법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6일 봉제업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도 반영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3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 외국산 의류 라벨같이 적발 사례 ●



수입의류를 국내 납품받아 원산지 표시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조달 납품(2023년)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 제거, 국산 거짓표시 후 인터넷 판매(2025년)

출처 : 관세청

합동단속 기간 정부는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여부, 수입 원재료 사용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공정 납품, 원산지 허위 광고, 외국산 의류의 국산 위장 수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이 되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①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②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유통망 해외 진출·역직구 동시 육성... 연 471억원 투입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유통기업 해외 진출과 역직구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매년 해외 진출 유통기업 8곳과 역직구 관련 기업 5곳을 선정해 현지 조사, 마케팅, 물류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부담 제약이 있었다. 특히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려워 해외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구조를 구축해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유통기업을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육성하고, 한류 확산과 글로벌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수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역직구 시장을 차세대 수출 채널로 육성한다. 역직구 규모는 2020년 11억 9,000만달러에서 2024년 29억달러로 143%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5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며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전면 전자화’ 2월 6일로 바뀐 미 CBP 관세 환급 방식



앤드류 박 |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수입구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 본 기업이라면 관세 환급(Duty Refund)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HS 분류 오류 정정, 사후 수정(Post Summary Correction), 항의(Protest), 또는 정책 변경에 따른 환급까지의 절차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우편으로 수표(Check)가 온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6년 2월 6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 환급을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즉, 전자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CBP의 관세 환급 대부분은 수표 형태로 발송됐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지급 전자화 정책 기조하에서 CBP가 환급 절차를 ACH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CBP와 미 재무부는 전자환급 제도로 전환한 배경으로 ▲종이 수표 방식에서 발생하던 분실, 지연, 부정 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급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연방정부 지급 시스템을 전자지급(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정 집행의 안정성과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종이 수표 환급은 사실상 폐지됐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의 변화에 불과하지 않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2월 6일 전자환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환급이 승인되도 실제 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전자환급 제도로 환급액이 자동으로 지급될 것 같지만, 결코 자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CBP가 환급을 승인하고 확정(certify)하더라도,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또는 CBP에 공식 지정된 제3자의 ACH 은행 정보가 통관시스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¹⁾ 포털에 정확히 등록돼 있지 않으면 환급은 'Reject(반려)' 처리된다. 이로 인한 지연에 대해 CBP는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 손실과 자금 지연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된다.

특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련 관세 환급이나 대규모 항의(Protest) 및 소송과 연계된 환급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자환급 요건 미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현금 흐름(Cash Flow)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환급 규모가 클수록 ACH 등록 여부는 곧 재무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많은 한국 수출기업과 해외 수입자들이 미국 은행 계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은행 계좌 자체가 아니라 ACE 계정의 통제권이다. 전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 Importer Sub-Account(수입자 서브계정), 그리고 Trade Account Owner(TAO, 계정 소유자)의 직접 승인이 필수적이다.

1) 미 CBP 및 관련 정부기관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무역거래 및 데이터 관련 실시간 접근을 제공한다.

문제는 ACE 계정이 과거 퇴사한 직원 명의로 남아 있거나, CBP Form 5106에 이메일을 등록한 지 오래돼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이다. 관세사는 실무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입자 본인의 계정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기에 이런 경우 환급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법인이 없는 한국 수출기업, 즉 Foreign IOR(Importer of Record)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ACH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관세사 등 제3자를 CBP Form 4811을 통해 환급 수령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때 4811 지정 내용, ACE 내 ACH 등록 정보, 그리고 실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기재된 4811 Notify Party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과거에 4811을 제출한 이력이 있더라도, 지정자가 ACH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그대로 반려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자와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CE 계정의 TAO가 누군지 확인하고, CBP Form 5106에 등록된 이메일과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ACH 환급을 받을 은행 계좌정보를 ACE에 직접 등록하고, 관세사와 환급 수령구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하며, 회계 재무팀이 ACE 환급 리포트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CBP는 환급에 대해 별도로 개별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환급 제도로 CBP가 수입자와 해외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역 컴플라이언스에서 디지털 준비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준비된 기업은 환급을 신속히 회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손해를 본다. 이제 관세 환급은 기다리면 오는 수표(체크)가 아니라, 수입자와 수출기업이 직접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재무 항목이 됐다²⁾.

2) References:

1. The Electronic Refunds Interim Final Rule was published on January 2, 2026, in the Federal Register(FR Document 2025-24171)
2. CSMS # 67270895 - Electronic Refunds Interim Final Rule Effective February 6, 2026
3. The modernization of refund issuance from paper checks to ACH aligns with Executive Order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which directs federal agencies to transition to electronic refunds for all federal disbursements and receipt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감면 / 재수출면세

기계를 국내에서 수리 후 수출하기 위해 먼저 관련 부분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리 목적의 부분품을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수리될 피수리물품을 일컫는 것으로 문의하신 물품(수리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FTA / 업체별 인증수출자 신청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처럼 HS Code 6단위별, 협정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는 업체 자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은 다음 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가 선행돼야 하니, 점수 기준 20점을 충족한 후 인증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특수통관 / 카메라 해외 직구

필름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먼저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일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확인하려면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기구’의 ‘그 밖의 사진기’의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9006.53-909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세율(A) 8%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수입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text{관세} &= \text{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times \text{관세율} \\ \text{부가세} &= (\text{과세가격} + \text{관세}) \times \text{부가세율} \end{aligned}$$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철강 및 파생제품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 본지는 2025년 제2140호(7.27. 발행)에서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②’로 철강 및 파생제품 편을 수록한 바 있다. 그후 미국 상무부는 관세 대상 철강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항공기 부품품 관련 면제 품목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까지(2026.1.31. 기준) 추가된 조치를 반영한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896)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6월 3일, 이를 다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94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철강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품별 관세율은 철강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철강 성분 이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상호관세 또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포고문 10896의 이행을 위해 포고문에서 언급한 철강제품의 추가관세 부과를 위해 미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이하 ‘HTSUS’라 한다) 제99류를 개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Notice)했다.

이후에도 상무부는 새로운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까지 미국정부의 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포고문 10896(2025.2.10.) :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포고문 10896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코드 기준으로 177개 품목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포고문은 철강 수입 증가로 미국 내 철강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미국의 산업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강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수입조정 대상 177개 중 대부분인 165개 품목이 HS 제73류에 집중돼 있었다. 제73류 이외의 물품, 그 자체로 철강이 본질인 상품은 아니나 성격상 철강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84류와 제94류의 물품 일부(12개 품목)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포고문 10896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부속서가 아닌 본문이다. **포고문 본문의 제(1)항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적용받던 쿼터(quot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과거 2018년 3월 8일자 포고문 9705(미국 철강 수입조정)에서 언급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원칙으로 회귀한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1).

2018년 3월 8일 포고문 9705를 통해 미국은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72류와 제73류의 주요 철강제 자재 및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조정 조치를 공포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각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체결했던 대안적 조치[쿼터, 저율할당관세, TRQ(Tariff Rate Quota) 등]를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사실상 유예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결과 포고문 9740(2018.4.30.)을 통해 25% 관세 부과 대신 수출 수량 제한(절대 쿼터)을 적용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이 당시 적용된 쿼터는 2015~2017년 기간 중 평균 수입량의 70%에 해당하는 263만톤이다.

1) (1) The provisions of Proclamation 9740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South Korea ... <중략> ... shall be ineffective as of 12:01 a.m. eastern time on March 12, 2025. ... <중략> ... As of 12:01 a.m. eastern time on March 12, 2025, all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shall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s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과 관련한 포고문 9740은 2025년 3월 12일부터 무효화되며 ... <중략> ... 2025년 3월 12일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포고문 9705서 규정된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즉, 포고문 10896은 이러한 예외 조치(쿼터, TRQ 등)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처럼 쿼터를 적용받아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국가들도 다시 2018년에 세워진 기본 정책인 ‘25% 관세’ 체제로 강제로 복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출하던 철강제품에 갑자기 추가관세가 부과된 것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시각에서는 25% 추가관세는 기본 베이스였고 그동안 한국 등에 제공했던 쿼터는 일시적인 ‘관세 면제권’이었으며, 이제 그 면제권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일 것이다.

2) 미국 상무부 공고(2025.3.10.) : 포고문 이행을 위한 HTSUS 제99류 개정 공고²⁾

포고문 10896 공포 이후 2025년 3월 10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포고문 10896의 이행과 관련한 HTSUS 개정사항을 공고(Notice)했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포고문 10896의 부속서에 언급된 177종의 품목만 아니라 기존 포고문 9740 등에 따라 수입쿼터가 적용되던 물품까지 포함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부속서상 목록 177종 이외에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로 25%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i)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6호 (j)항의 물품

- * 제7208호, 제7209호, 제7210호, 제7211호, 제7212호, 제7225호 또는 제7226호의 평판압연제품
- * 제7213호, 제7214호, 제7215호, 제7227호 또는 제7228호의 봉
- * 제7216호의 형강(소호 제7216.61호, 제7216.69호 또는 제7216.91호 제외)
- * 제7217호 또는 제7229호의 선
- * 소호 제7301.10호의 널말뚝
- * 소호 제7302.10호의 레일
- * 소호 제7302.40호의 이음매판과 받침판
- * 소호 제7302.90호의 기타의 철강제품
- * 제7304호, 제7305호 또는 제7306호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 * 제7206호, 제7207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일차제품과 반제품

2) ‘미국 내 철강 수입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6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11249, 문서번호: 2025-03598

* 제7218호, 제7219호, 제7220호, 제7221호, 제7222호 또는 제7223호의 스테인리스강의 제품

ii)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6호 (I)항의 물품

* 미국 소호³⁾ 제7317.00.30호의 나선가공됐고 동력구동식 수공구에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못 등

* 미국 통계코드 제7317.00.5503호, 제7317.00.5505호, 제7317.00.5507호, 제7317.00.5560호, 제7317.00.5580호 또는 제7317.00.6560호의 못 등

* 미국 소호 제8708.10.30호의 범퍼 스탬핑

* 미국 소호 제8708.29.21호의 바디 스탬핑

3) 대통령 포고문 10947(2025.6.3.) : 추가관세 25%를 50%로 인상

2025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10896과 그 이행 공고를 통해 발표된 수입조정 대상 물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4) 미국 상무부 공고(2025.6.16.) :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⁴⁾

이후 2025년 6월 16일,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연방관보를 통해 포고문 10896 및 10947의 이행과 관련한 HTSUS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철강제품 추가관세를 이전의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리스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 관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 공고를 통해 냉장고(제8418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세탁기(제8450호), 건조기(제8451호), 전기오븐(제8516호) 등 8종의 물품군(미국 통계코드 기준 11개 품목)이 추가로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5)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 수입조정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⁵⁾

그러나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어서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6에 따른

3) HS 품목분류표에서 호(heading)는 4단위 코드를 가리키고, 소호(subheading)는 6단위 코드를 의미한다. 미국 HTSUS에서는 8단위 코드를 'subheading'이라 표현하고 10단위 코드를 'statistical reporting number'라고 표현한다. 여기서는 HS(HTSUS 공통) 4단위 코드를 호, 6단위 코드를 소호로 구분하고, HTSUS 8단위 코드를 '미국 소호', 10단위 코드를 '통계코드'라 한다.

4) '미국 내 철강 수입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6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25208, 문서번호: 2025-11067

5)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포함 절차의 채택 및 규정(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Inclusions Process)', 연방관보 번호: 90 FR 40326, 문서번호: 2025-15819

철강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고했다. 이 공고에서는 기존의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73류 일부 물품이 추가로 편입되는 한편, 철강재료를 사용하는 기계류 및 그 부분품 류가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철강제 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위의 1)~5) 포고문 및 공고에서 언급된 물품의 상세 목록과 적용세율은 현재 미국의 HTSUS 제99류(Chapter 99)의 제3절(Sub-Chapter III)에 기재돼 있다⁶⁾.

HTSUS의 제99류는 일반적인 품목분류(제1~97류)와 달리, 미국정부가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별 관세 및 무역 조치를 규정하는 섹션이다. 국제 표준인 HS 협약상 품목분류표 체계를 제1~97류와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잠정적 입법 조치(Temporary Legislation)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관세율표에 기재된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반대로 특정 조건하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들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301조 등에 의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또는 안보 목적의 관세 부과,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할당관세(Quota) 관리 등이 포함된다.

6)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⁷⁾

2025년 2월, 3월, 6월, 8월을 거치면서 철강을 원료로 하는 수많은 제품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돼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세율 이외에 추가관세 50%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2025년 11월 한·미 관세협상 이후 2025년 12월 4일자로 미국 상무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라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수입조정 대상 HTSUS에 해당하더라도 이 공고에 규정된 항공기 부분품인 경우 추가관세에서 면제돼 해당 품목코드에 규정된 MFN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HTSUS 통계 코드 제9903.02.81호에 명시돼 있으므로 수입조정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공기 부분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 코드 번호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6) 품목별 관세 대상 물품의 HTSUS 코드 명세는 포고문과 공고의 부속서(Annex)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미국 HTSUS 개정판에도 반영돼 있다. 여기서 인용한 미국의 품목분류 코드는 HTSUS 2026(Rev 2)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7)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특정 관세 관련 요소 이행(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연방관보 번호: 90 FR 55964, 문서번호: 2025-21940

● HTSUS 제9903.02.81호의 내용 ●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General	Special	2
9903.02.81	U	Articles of civil aircraft (all aircraft other than military aircraft); their engines, parts, and components; their other parts, components, and subassemblies; and ground flight simulator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of South Korea, excluding unmanned aircraft, provided for in subdivision (v)(xxiv)(b) of U.S. note 2 to this subchapter.....U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이번 호에서는 수입조정 대상인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의 HTSUS 코드별로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1)의 포고문 10896 부속서, 그리고 상무부 공고 중 2)- ii -, 4), 5)에 포함된 물품을 모두 통합해 설명하고자 한다⁸⁾. 상무부 공고 2)- i 에 규정하고 있는 HS 4단위 및 6단위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⁹⁾

우선 제2항에서는 제72류와 제73류를 중심으로 미국이 지정한 수입조정 대상 물품과 그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HSK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하되 해당 물품과 관련한 HTSUS 세분류체계를 함께 제공해 대상 품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항에서는 제72류와 제73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 포함되는 수입조정 대상 물품(철강 파생제품)의 목록과 그에 대응되는 HSK 코드의 연계표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의 연계표에는 참고를 위해 해당 물품이 앞서 언급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조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제품의 HSK 코드 분석

관세율표 제72류와 제73류에는 철강 및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제72류에는 철강야금의 일차재료인 철강의 입상(粒狀) 또는 분상(粉狀) 원료나 블록, 잉곳과 같은 일차형상의 제품 그리고 압연이나 인발, 단조와 같은 1차 가공을 거친 제품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이나 철강제의 봉, 형강, 반제품 등이 분류된다.

8) 여기서 언급한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 대상 목록은 HTSUS 제99류 주 제16호 (l)항, (m)항 및 (n)항의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9) 본지에는 상무부 공고 2)- i 와 ii 관련 추가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일부만 연계표를 게재했다.

제72류의 물품은 최초 포고문상 부속서와 상무부 공고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와 함께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제72류 대부분의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앞의 1-2)- i 항 참조).

□ 제72류(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¹⁰⁾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0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10-1000 7216.10-2000 7216.10-3000	
7216.2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00 엘(L)형강	7216.21-0000	
7216.22	00 티(T)형강	7216.22-0000	
7216.3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00 - 유(U)형강	7216.31-0000	
7216.32	00 - 아이(I)형강	7216.32-0000	
7216.33	00 - 에이치(H)형강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16.40	0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0-1000 7216.30-2000	
7216.50	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50-0000	
7216.6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7216.69	기타		
7216.9	기타		
7216.91	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10) 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만 수입조정 대상이며, 미국 정부의 포고문이나 공지에서 수입조정 대상 코드 중 특정 코드는 HTSUS 8단위로 표시된 반면, 다른 코드는 HTSUS 10단위로 표시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10 --	구멍을 뚫었거나, 눈금을 새겼거나 흰 것 ¹¹⁾	ex ¹²⁾ 7216.91-0000	
	90 --	기타		
7216.99	00	기타	7216.99-0000	

형강이란 전 길이를 통해 횡단면이 균일한 물품으로 평판압연제품, 봉, 중공 프로파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¹³⁾.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 철강제의 형강이 분류되며 이러한 형강은 보통 블룸(bloom)이나 빌릿(billet)을 열간압연·열간인발·열간압출이나 열간단조나 단조해 제조한다. 이러한 공정 이외에 냉간처리나 드릴링, 펀칭 정도의 가공을 한 물품도 제7216호에 포함된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스트립을 용접한 방식으로 제조된 형강은 제7301호에 분류된다.

제73류에는 제72류의 물품을 재료를 추가가공해 만들어낸 중간 단계의 재료·부품이나 완성이 분류된다. 포고문은 제73류 철강제품 중 제7303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제7302호의 일부 물품과 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에 따라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군에 해당한다(앞의 1-2)- i 항 참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제7303호의 주철제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을 제외한 제73류의 거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7301호 및 제7302호(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	7301.10-1000 7301.10-9000	

11) 미국 관세율표(HTSUS)에서는 물품 세분류 시 그룹 구분을 위한 dash(-)를 사용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독자들이 세분류 체계에서 계층(hierarchy)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의로 dash를 사용했다.

12) HSK 연계 항목에서 'ex'로 표시된 것은 'ex-out'을 의미하며 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연계됨을 의미한다. 즉 이 표의 행에서 한국의 HSK 코드 제7216.9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일부만 미국 HTSUS 코드 제 7216.91.0010호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
 파. 형강(形鋼) :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1.20		형강(形鋼)		
	10	- 철과 비합금강의 것	7301.20-1000	
	50	- 합금강의 것	7301.20-2000 7301.20-3000 7301.20-9000	
7302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 책레일, 락 레일,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 <후략>)		
7302.10		레일(Rail)		
	10	- 철과 비합금강의 것	7302.10-1010	
	50	- 합금강의 것	7302.10-1090 7302.10-2010 7302.10-2090 7302.10-3010 7302.10-3090 7302.10-4010 7302.10-4090	
7302.30	00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과 그 밖의 크 로싱피스	7302.30-0000	
7302.40	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7302.40-0000	
7302.90		기타		
	10 00	슬리퍼(크로스 타이)	7302.90-0000	
	90 00	- 기타		

제7301호에는 널말뚝과 두 개 이상의 스트립을 용접한 방식으로 제조된 형강이 분류되며 제7302호에는 철강제의 레일과 선로 건설재료가 분류된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 조정 대상이다.

제7302호에는 철강제의 레일이 분류된다. 레일 자체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레일로 선로를 구성하는 경우 고정선로의 연결지점이나 교차지점에 사용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등은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 제7307호(수입조정 대상 1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7307.19		- 기타		
	30	-- 연성의 관 연결구	7307.19-0000	
	90	-- 기타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의 것)		
7307.21		- 플랜지		
	10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7307.21-0000	
	50	-- 기타		
7307.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벤드(bend), 슬리브(sleeve)		
	10	-- 슬리브(커플링)	7307.22-1000	
	50	-- 기타	7307.22-9000	
7307.23	00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23-0000	
7307.29	00	- 기타	7307.29-0000	
7307.9		기타		
7307.91		- 플랜지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7307.91-0000	
	3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50	-- 기타		
7307.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벤드(bend), 슬리브(sleeve)		
	30	-- 슬리브(커플링)	7307.92-1000	
	90	-- 기타	7307.92-9000	
7307.93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 내경 360mm 미만의 것		
	3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7307.93-0000	
	6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90	-- 내경 360mm 이상의 것		
7307.99		- 기타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ex 7307.99-9000	
	3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ex 7307.99-9000	
	50	-- 기타	ex 7307.99-1000	
			ex 7307.99-9000	

제7307호에는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서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철강제 관 연결구류(fittings)가 분류된다. 포고문 상으로는 비가단 주철로 주조한 것을 제외한 모든 관 연결구류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08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 <후략>		
7308.10	00	다리와 교량	7308.10-0000	
7308.20	00	탑과 격자주(格子柱)	7308.20-0000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스테인리스강의 것	7308.30-0000	
	50	기타		
7308.40	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7308.40-0000	
7308.90		기타		
		기둥, 포스트, 빔, 거더 및 유사한 구조물 유닛		
	30	-- 합금강의 부분품이 아닌 것	ex 7308.90-9000	
	60	-- 기타	ex 7308.90-9000	
		기타		
	70	-- 강제 격자	ex 7308.90-9000	
	95	-- 기타	ex 7308.90-1000 7308.90-9000	

제7308호에는 철강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구조물은 통상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보통 봉, 형강, 쉬트, 프로파일, 관 등의 재료를 기본 골격으로 해 만들어지며 통상 제73류의 물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관적이라 할 수 있다. 제7308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09호부터 제7311호의 철강제 용기(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9.00	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 <중략> ...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 <후략>)	7309.00-0000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 <중략> ...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후략>)		
7310.10	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7310.10-0000	
7310.2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7310.21	00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7310.21-0000	
7310.29	00	- 기타	7310.29-0000	
7311.00	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철강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용기(container)가 분류된다. 그 저장 용량에 따라 300리터 이상의 대형 용기는 제7309호에, 300리터 이하의 중소형 용기는 제7310호에 분류되며, 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 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 이들 3개 호에 포함되는 모든 용기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12호부터 제7314호까지의 철강제의 선 및 그 제품(수입조정 대상 3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로프, 케이블, 엮은 밴드,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 연선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5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1011	○
	10	--- 기타	7312.10-1019	○
		-- 기타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2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1091	○
	30	--- 기타	7312.10-1092 7312.10-1099	○
		- 로프, 케이블 및 연선 이외의 밧줄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5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2011	○
	60	--- 기타	7312.10-2019	○
		-- 기타		
	7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2091	○
		--- 기타		
	80	---- 황동 도금된 것	ex 7312.10-2092 ex 7312.10-2099	○
	90	---- 기타	ex 7312.10-2092 ex 7312.10-2099	○
7312.90	00	기타	7312.90-0000	○
7313.00	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 대, 평선을 끈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끈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1000 7313.00-9000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그릴, 망,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1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2-0000	
	2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고 36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2-000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36개를 넘는 것		
		--- 제지기계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초기지 와이어		
	30	---- 센티미터당 와이어가 94개 이상의 것	ex 7314.12-0000	
	60	---- 기타	ex 7314.12-0000	
	90	--- 기타	ex 7314.12-0000	
7314.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4-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2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고 36개를 넘지 않는 것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36개를 넘는 것 --- 제지기계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초기지 와이어	ex 7314.14-0000	
	30	---- 센티미터당 와이어가 94개 이상의 것	ex 7314.14-0000	
	60	---- 기타	ex 7314.14-0000	
	90	--- 기타	ex 7314.14-0000	
7314.19	01	- 기타	7314.19-0000	
7314.20	00	그릴, 망,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314.20-0000	
7314.3		그 밖의 그릴, 망,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 선으로 만든 울타리(플라스틱 재료로 도포된 것인지 여부 불문)	7314.31-0000	
	50	-- 기타		
7314.39	00	- 기타	7314.39-0000	
7314.4		그 밖의 클로스(cloth), 그릴, 망, 울타리		
7314.41	00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314.41-0000	
7314.42	00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314.42-0000	
7314.49		- 기타		
	30	-- 재단하지 않은 것	7314.49-0000	
	60	-- 재단한 것		
7314.50	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50-0000	

철강제의 봉(bar and rod)과 철강제의 선(wire)은 전 길이를 통해 중공이 없고 횡단면이 균일한 형태의 기다란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관적으로 선은 봉에 비해 두께나 직경이 가늘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봉과 선의 차이에 대해 제72류에서는 선은 코일상(in coil)으로 감기는 냉간성형 제품¹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73류에서는 직경 16mm 이하의 제품¹⁵⁾을 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14) 제72류 주 제1호 하목

하. 선(線):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선(single wire) 형태로 제시되는 철강제의 선은 제72류(제7217호 등)에 분류되며, 단선을 2개 이상 꼬아서 만든 연선이나 로프, 케이블은 제7312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이를 철조망 형태로 제조한 물품은 제7313호에, 제11부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공한 것은 제7314호에 분류된다. 제7312호에서 제7314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다만 제7312호 물품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면 수입조정 조치에서 제외된다.

□ 제7315호 및 제7316호(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00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1-0000	
7315.12	00	그 밖의 체인	7315.12-0000	
7315.19	00	- 부분품	7315.19-0000	
7315.20		스키드체인		
	10	직경 8mm를 넘지 않는 것	7315.20-0000	
	50	직경 8mm를 넘는 것		
7315.8		기타 체인		
7315.81	00	스터드 링크	7315.81-0000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 합금강의 것		
	10	--- 직경 10mm를 넘지 않는 것	ex 7315.82-0000	
	30	--- 직경 10mm를 넘는 것	ex 7315.82-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50	--- 직경 10mm를 넘지 않는 것	ex 7315.82-0000	
	70	--- 직경 10mm를 넘는 것	ex 7315.82-0000	
7315.89		기타		
		-- 횡단면이 본질적으로 원형인 링크의 것		
	10	--- 직경 8mm를 넘지 않는 것	7315.89-0000	
	30	--- 직경 8mm를 넘는 것		
	50	-- 기타		
7315.90	00	기타의 부분품	7315.90-0000	

15) 제73류 주 제2호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6.00	00	철강으로 만든 닛과 그 부분품	7316.00-1000 7316.00-2000	

제7315호에 분류되는 모든 철강제 체인과 제7316호의 닛과 그 부분품 또한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범용성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2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 압정, 제도용 핀, 물결 모양 못,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10	- 엄지 압정(thumb tack)	ex 7317.00-2000	
		- 기타, 동력구동식(power actuated) ¹⁶⁾ 수공구에 사용 하기 적합한 것		
	20	-- 나선가공하지 않은 것	ex 7317.00-1011 ex 7317.00-1019 ex 7317.00-1021 ex 7317.00-1029 ex 7317.00-2000 ex 7317.00-4000 ex 7317.00-5000	
	30	-- 나선가공한 것	ex 7317.00-1011 ex 7317.00-1019 ex 7317.00-1021 ex 7317.00-1029 ex 7317.00-2000 ex 7317.00-4000 ex 7317.00-5000	
		- 기타		
		-- 한 조각으로 구성된 것		
	55	--- 둥근 와이어로 제조한 것	ex 7317.00-1011 ex 7317.00-1019	
			ex 7317.00-1011 ex 7317.00-1019	
	65	--- 기타	ex 7317.00-2000 7317.00-3000 ex 7317.00-4000 ex 7317.00-5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5 00	-- 두 조각 이상으로 구성된 것	ex ex	7317.00-1021 7317.00-1029
7318.0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스크루 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00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7318.11-0000
7318.12	00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7318.12-0000
7318.13	00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7318.13-0000
7318.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1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미만인 것		7318.14-0000
	5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이상인 것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20	-- 볼트 및 볼트와 너트 또는 와셔가 함께 선적되어 제시되는 것		7318.15-2000 7318.15-3000
	40	-- 길이 9.5mm 이상 직경 3.2mm 이상인 것 (캡 스크루 제외)	ex ex	7318.15-1000 7318.15-9000
	50	-- 스테드	ex	7318.15-9000
		-- 기타		
	6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미만인 것	ex ex	7318.15-1000 7318.15-9000
	8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이상인 것	ex ex	7318.15-1000 7318.15-9000
7318.16	00	- 너트		7318.16-0000
7318.19	00	- 기타		7318.19-0000
7318.2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00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7318.21-0000
7318.22	00	- 그 밖의 와셔		7318.22-0000
7318.23	00	- 리벳		7318.23-0000
7318.24	00	- 코터와 코터핀		7318.24-0000
7318.29	00	- 기타		7318.29-0000

16) HTSUS에서 품명(Article Description)상으로는 'powder-actuated'라고 기술돼 있으나 오타로 보인다.

제7317호와 제7318호의 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범용성 부분품¹⁷⁾이다.

제7318호의 볼트(bolt)와 너트(nut), 스크루(screw) 등은 통상 완성 상태에서는 나선이 파여 있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 데 사용한다. 볼트나 스크루는 너트나 와셔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7318.15호에는 볼트나 스크루만 제시되거나 이들이 너트와 함께 제시될 경우(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r washers)를 모두 포함¹⁸⁾하고 있다.

즉, 너트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7318.16호에 분류되는 반면, 볼트에 (일대일로) 부착 또는 부가돼 제시되는 너트는 볼트와 함께 제7315호에 분류된다는 의미다.

다만 10단위 체계에서 미국 HTSUS와 우리나라 HSK가 이에 대해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HTSUS에서는 ‘너트나 와셔와 같은 선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볼트’라고 규정하는 반면, HSK는 ‘볼트, 너트(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소호 용어로 보자면 HTSUS가 HSK보다도 넓게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통관단계에서 볼트와 너트가 함께 제시되는 조합의 형태에 따라 10단위 품목분류의 해석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볼트와 너트가 함께 제시된 물품의 품목분류 ●

HTSUS		HSK	
Subheading	Article Description	품목번호	품명
7318.15.20	Bolts and bolt and their nuts or washer entered or exported in the same shipment.	7318.15-3000	볼트, 너트 (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7317호와 제7318호에 해당하는 모든 범용성 부분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17)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18) 소호 제7318.15호의 용어: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너트나 와셔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Other screws and bolts, 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r washers)

□ 제7319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	HTSUS	품명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7319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20			- 안전핀		7319.40-1000
	30			- 재단사용 또는 보통의 핀	ex	7319.40-9000
	50			- 기타		7319.40-2000
					ex	7319.40-9000
7319.90				기타		
	10			- 바느질용, 짜깁기용 또는 자수용 바늘		7319.90-1010 7319.90-1090
					ex	7319.90-9000
	90			- 기타		7319.90-1020
					ex	7319.90-9000

제7319호에는 바느질, 뜨개질, 자수, 직물이나 양탄자 제조, 가죽공예 등에 사용되는 모든 철강제 바늘(needle)과 핀(pin)이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이다.

다만 HSK 품명에서 영문 표현상의 모호한 부분이 하나 있다. 제7319호 호의 용어에서 영문의 'Knitting needle'을 관세율표에서는 '수편침(뜨개질 바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HSK 제7319.90-1020호에서는 국문 품명 '수편침'의 영문 품명을 'Darning needle'로 표현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영문 품명의 오역으로 보인다.

'Darning'은 직물의 해지거나 구멍 뚫린 부분을 기워내는 작업을 의미하여 이는 (뜨개질이 아닌) 바느질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HTSUS에서는 제7319.90.1000호에서 'Sewing, darning or embroidery needles'를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 Darning(꿰맬) 작업과 그 바늘(좌) & 수편침뜨개질(Knitting) 바늘(우) ●



‘Darning needle’의 품목분류에서 HSK 10단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HSK 용어는 국문이 영문에 우선한다. 따라서 HSK 제7319.90-1020호에는 ‘Darning needle’이 아닌 ‘뜨개바늘(Knitting needle)’이 분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7320호(수입조정 대상 7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30	-- 총중량(GVM) 4톤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	ex	7320.10-1000
60	-- 기타	ex	7320.10-1000
90	- 기타	ex	7320.10-1000 ex 7320.10-2000 ex 7320.10-9000
7320.20	나선형 스프링		
10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ex	7320.20-1000
50	- 기타	ex	7320.20-1000 ex 7320.20-2000 ex 7320.20-3000 ex 7320.20-4000 ex 7320.20-9000
7320.90	기타		
10	- 헤어스프링(hairspring)	ex	7320.90-9000
50	- 기타	ex	7320.90-1000 ex 7320.90-9000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선(wire)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며 상당히 끌어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이 있는 범용성 부분품을 말한다.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스프링은 크게 판상 스프링과 나선형 스프링으로 나뉜다. 자동차에서 스프링은 보통 서스펜션과 같은 완충장치용으로 사용되지만 서스펜션 이외에도 밸브, 클러치, 브레이크, 시트(seat)나 도어 및 후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HTSUS에서는 ‘자동차 서스펜션용’의 스프링을 별도로 계기하고 있으며, HSK는 ‘자동차용’과 ‘충격흡수용’을 같은 레벨에서 세분하고 있다.

제7320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21호(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레인지(range), 불판,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0	-- 휴대용의 것	ex	7321.11-0000
		-- 기타		
	30	--- 스토브나 레인지	ex	7321.11-0000
	60	--- 기타	ex	7321.11-0000
7321.12	00	- 액체연료용		7321.12-0000
7321.19	00	- 기타(고체연료용 포함)		7321.19-0000
7321.8		그 밖의 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0	-- 휴대용의 것		7321.81-0000
	50	-- 기타		
7321.82		- 액체연료용		
	10	-- 휴대용의 것		7321.82-0000
	50	-- 기타		
7321.89	00	- 기타(고체연료용 포함)		7321.89-0000
7321.90		부분품		
		- 제7321.11.30호의 것		
	10	-- 조리용 챔버(조립된 것인지 여부 불문)		7321.90-0000
	20	-- Top surface panel(버너나 조절기 포함 여부 불문)		
	40	-- 도어 어셈블리(내부 패널, 외부 패널, 창문, 절연체 중 하나 이상을 결합한 것)		
	50	-- 기타		
	60	- 기타		

제7321호에는 보통 가정용이나 캠핑용의 레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는 철강제 기구가 분류된다. 제7321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22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 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9	00	- 기타(주철로 만든 것 제외)	7322.19-1000 7322.19-2000	
7322.90	00	기타	7322.90-9010 7322.90-9020 7322.90-9030	○

제732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포고문은 제7322호에서 소호 제7322.11호의 주철(cast iron)로 만든 방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제7322.90호에 해당하는 공기가열기나 온풍배분기의 경우 항공기용이면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철이란 주조 방식으로 만든 철강제품¹⁹⁾을 말한다. 주조는 금속을 녹여 원하는 형태의 틀(몰드)에 부은 다음 식혀서 고체화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제7307호의 비가단주철로 주조한 연결구류를 포함해 포고문에서는 주철제 물품을 대체로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제7323호 및 제7324호(수입조정 대상 1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	7323.10-0000	

19) 제72류 주 제 1호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 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와 유사한 것		
7323.9		기타		
<생략>				
7323.93	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323.93-0000	
7323.94	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 의 것	7323.94-0000	
7323.99		기타		
		-- 귀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된 것		
	10	--- 은으로 도포 또는 도금된 것	ex 7323.99-0000	
	30	--- 기타	ex 7323.99-0000	
		-- 귀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되지 않은 것		
	50	--- 주석도금된 것	ex 7323.99-0000	
		--- 기타		
	70	---- 조리기구	ex 7323.99-0000	
	90	---- 기타	ex 7323.99-0000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00 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 로 한정한다)	7324.10-1000 7324.10-2000	○
7324.2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		
<생략>				
7324.29	00 00	기타	7324.29-1000 7324.29-9000	
7324.90	00 00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7324.90-1000 7324.90-8000 7324.90-9000	○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이 분류되며,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이 분류된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고문에서는 이들 호에서 주철로 만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제7325호(수입조정 대상 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5		철강제의 주물 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생략>				
7325.9		기타		
7325.91	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5.91-0000	
7325.99		- 기타		
	10	-- 주철의 것	7325.99-1000	
	50	-- 기타	7325.99-2000 7325.99-3000 7325.99-9000	

제7325호에는 제73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all cast article)을 포함한다. 포고문은 제7325호에서 비가단주철을 제외한 가단주철로 만든 물품에 한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단주철(malleable cast iron)이란 탄소 함량이 높은 주철에 적당한 열을 가해 가단성(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가단주철은 내충격성과 인장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적합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부품 및 장비의 제조에 사용된다. 포고문은 제73류에서 가단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7326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1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6.11-0000	
7326.19	00	- 기타	7326.19-0000	
7326.20	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7326.20-000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6.90	기타			
	10	- 주석도금한 것	ex 7326.90-1000 ex 7326.90-9000	
		- 기타		
	25	-- 캘리퍼 브레이크나 캔틸레버 브레이크용의 케이블 또는 내부 와이어	ex 7326.90-9000	
	35	--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기 적합한 용기	ex 7326.90-9000	
	45	-- 말발굽과 당나귀발굽	ex 7326.90-9000	
		-- 기타		
	60	--- 귀금속으로 도포나 도금된 것	ex 7326.90-9000	
	86	--- 기타	ex 7326.90-9000	

제7326호에는 제73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제품으로 단조, 펀칭, 절단, 스탬핑, 조립, 용접, 밀링 등 그 밖의 공정에 의해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제7326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3.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 10896은 제72류와 제73류 이외에 철강 재료로 만든 다른 류의 제품, 특히 기계류의 부분품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HTSUS 8단위 코드 기준으로 12개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물품은 전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철강의 비중에 따라 수입조정 조치에 따른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포고문 10947 부속서(ANNEX II)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u) The rate of duty in heading 9903.81.98 apply to all imported derivative iron and steel products that are classified in the following subheadings of the HTSUS ... <중략> ... : 8431.31.00, 8431.42.00, 8431.49.90, 8431.49.90, 8432.10.00, 8432.90.00, 8547.90.00, 9403.20.00, 9405.99.20, 9405.99.40, 9406.20.00, 9406.90.01.

For any derivative steel article that is classified one of the subheadings of the HTSUS that is listed in the subdivision, **the additional as valorem duty** imposed by heading 9903.81.98 shall **only apply to the declared value of the steel content** of the derivative articles. The quantity of the steel content shall be reported in kg ... <후략>

포고문 10896에서는 HS 제8431호, 제8432호, 제8547호, 제9403호, 제9405호 및 제9406호 등 6개 호에 포함되는 12개 품목만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공고에서는 추가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파생제품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초 포고문에서 규정한 물품과 같이 제72류나 제73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철강을 포함한 비금속 재료를 주로 해서 만드는 제품, 장치, 기계류 또는 그 부분품 종류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HS 제15부 이후에 분류된다. 공고문에는 제82류부터 제87류까지, 그리고 제94류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 특성상 철강 재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84류(기계류)에 해당 품목이 가장 많다.

둘째는 철강제 포장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밀크, 조제식료품, 유기·무기화합물, 화장품, 페인트 등은 유통 과정에서 철강제의 캔이나 드럼, 탱크 등의 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철강제 및 철강제품 자체에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해외 수출업체는 철강제 원자재를 이용해 용기를 제조하거나 타국에서 수입한 후 그 안에 다른 물품을 채워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우회 수입이 미국 철강산업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철강제 용기를 사용하는 품목군 전체를 감시망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포고문과 추가 공고에 포함된 철강 파생제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철강제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및 산물(수입조정 대상 8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0402.99	68	그 밖의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7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9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2106.90	99 98	그 밖의 조제식료품	ex 2106.90-1010	
			ex 2106.90-1020	
			ex 2106.90-1090	
			ex 2106.90-2000	
			ex 2106.90-3011	
			ex 2106.90-3019	
			ex 2106.90-3021	
			ex 2106.90-3029	
			ex 2106.90-9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2106.90-9021
				ex	2106.90-9022
				ex	2106.90-9023
				ex	2106.90-9030
				ex	2106.90-9040
				ex	2106.90-9050
				ex	2106.90-9060
				ex	2106.90-9070
				ex	2106.90-9091
				ex	2106.90-9099
2710.19	30 50	그 밖의 석유와 역청유(steam cylinder oil)		ex	2710.19-7210
2711.12	00 20	액화 프로판 가스(순도 90% 이상)		ex	2711.12-0000
2804.29	00 10	헬륨 가스			2804.29-1000
2804.40	00 00	산소			2804.40-0000
2901.22	00 0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2903.42	10 00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디플루로메탄(HFC-32)		2903.42-0000
2903.43	10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 에탄(HFC-152a)		2903.43-0000
2903.44	10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 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 (HFC-143)		2903.44-0000
2903.45	10		1,1,1,2-테트라플루오로 에 탄 (H F C - 1 3 4 a) 과 1,1,2,2-테트라플루오로 에탄(HFC-134)		2903.45-0000
2903.49	00		기타[트리플루오로메탄 (HFC-23) 제외]		2903.49-1000 2903.49-9000
2903.51	10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 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 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1-0000
2903.59	90	그 밖의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9-0000
2903.71	01 00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2903.71-0000
3004.90	92 44	기타 의약품(피부과적 약제와 국소마취제)		ex	3004.90-9900
3208.10	00	비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폴리에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10-1010 3208.10-1090 3208.1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208.10-3000	
3208.20	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1011 3208.20-1019 3208.20-1020 3208.20-1030 3208.20-2011 3208.20-2019 3208.20-2020 3208.20-2030	
3208.90	00	기타	3208.90-1011 3208.90-1019 3208.90-1020 3208.90-1030 3208.90-9011 3208.90-9019 3208.90-9020 3208.90-9030	
3209.10	00	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9.10-1011 3209.10-1019 3209.10-1020 3209.10-2010 3209.10-2020
3209.90	00	기타	3209.90-1011 3209.90-1019 3209.90-1020 3209.90-9011 3209.90-9019 3209.90-9020	
3213.90	00	세트 상태가 아닌 화가용 물감 등	3213.90-1000 3213.90-2000 3213.90-9000	
3214.10	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 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 (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10-1060 3214.10-1080 3214.10-1090 3214.10-2000 3214.10-9000	
3303.0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플로럴 워터	3303.00-1000
3303.00	20	향수와 화장수	기타	3303.00-2000
3303.00	30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와 화장수	
3304.30	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30-1000 3304.30-9000	
3304.99	50	그 밖의 화장품	3304.99-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304.99-2000 3304.99-3000 3304.99-9000	
3305.10	00	두발용 제품류	샴푸	3305.10-0000	
3305.30	00		헤어 래커(hair lacquer)	3305.30-0000	
3305.90	00		기타	3305.90-1000 3305.90-2000 3305.90-9000	
3306.90	00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약과 치실 제외)		3306.90-1000 3306.90-2000	
3307.10	10	면도용 제품류	알코올 비함유	3307.10-1000	
3307.10	20		알코올 함유	3307.10-9000	
3307.20	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20-0000	
3307.49	00	그 밖의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00	
3307.90	00	그 밖의 화장용품		3307.90-1000 3307.90-3000 3307.90-4000 3307.90-9000	
3401.30	1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	방향 성분 함유	3401.30-0000	
3401.30	50	제품과 조제품	기타	3401.30-0000	
3402.31	9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방향 성분 비함유)		ex 3402.31-0000	
3402.49	90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방향 성분 비함유)		ex 3402.49-0000	
3402.50	11	소매포장된 조제세제 등	방향 성분 함유	3402.50-1000	
3402.50	51		방향 성분 비함유	3402.50-2000 3402.50-9000	
3402.90	10	그 밖의 조제세제 등	합성세제	3402.90-1000	
3402.90	30		기타(방향 성분 함유)	3402.90-2000	
3402.90	50		기타(방향 성분 비함유)	3402.90-3000	
3403.19	1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한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50% 이상	3403.19-1000 3403.19-3000	
3403.19	50		기타	3403.19-4000 3403.19-5000 3403.19-9000	
3403.99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3403.99-1000 3403.99-2000 3403.99-9000	
3405.10	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10-0000	
3405.20	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		3405.2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40	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5.40-0000	
3405.90	00	그 밖의 광택제(차체 광택제 제외)	3405.90-1030 3405.90-1090 3405.90-9000	
3506.10	50	순중량 1kg 이하로 소매포장된 글루(동물성 글루와 카제인 글루 제외)	ex 3506.10-1000 ex 3506.10-2000 ex 3506.10-9000	
3506.91	1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패널 제조용)		
3506.91	50	기타	3506.91-9000	
3506.99	00	그 밖의 접착제	3506.99-1000 3506.99-9000	
3808.5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ex 3808.59-1000 ex 3808.59-9000	
3808.59	40	살균제	ex 3808.59-1000 ex 3808.59-9000	
3808.61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이하 포장)	3808.61-1000	
3808.61	50	기타	3808.61-9000	
3808.62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7.5킬로그램 이하 포장)	3808.62-1000	
3808.62	50	기타	3808.62-9000	
3808.6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3808.69-1000	
3808.69	50	기타	3808.69-9000	
3808.91	15	살충제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25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30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50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30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50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4	10	소독제	3808.94-0000	
3808.94	50	기타	3808.94-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809.91	00	섬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가공제 등	3809.91-0000	
3810.10	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등	3810.10-1000 3810.10-9000	
3811.19	00	안티녹(anti-knock)제(납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이외의 것)	3811.19-0000	
3811.21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는 윤활유 첨가제	3811.21-0000	
3814.00	10	유기혼합용제	5~25퍼센트의 방향 성분 함유	3814.00-1020 3814.00-1030
3814.00	20		25퍼센트 이상 방향 성분 함유	3814.00-1090 3814.00-2110
3814.00	50		기타	3814.00-2190 3814.00-2910 3814.00-2990
3820.00	00		부동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1000 3820.00-2000
3824.99	93 97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	ex	3824.99-1000
			ex	3824.99-2100
			ex	3824.99-2210
			ex	3824.99-2290
			ex	3824.99-2900
			ex	3824.99-3100
			ex	3824.99-3910
			ex	3824.99-3990
			ex	3824.99-4100
			ex	3824.99-4200
			ex	3824.99-4300
			ex	3824.99-4400
			ex	3824.99-5100
			ex	3824.99-5200
			ex	3824.99-5300
			ex	3824.99-6100
			ex	3824.99-6200
			ex	3824.99-6300
			ex	3824.99-6400
			ex	3824.99-6500
		ex	3824.99-6600	
		ex	3824.99-7100	
		ex	3824.99-7200	
		ex	3824.99-7300	
		ex	3824.99-7400	
		ex	3824.99-7500	
		ex	3824.99-7600	
		ex	3824.99-77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3824.99-8000	
			ex 3824.99-9010	
			ex 3824.99-9020	
			ex 3824.99-9030	
			ex 3824.99-9040	
			ex 3824.99-9052	
			ex 3824.99-9053	
			ex 3824.99-9059	
			ex 3824.99-9090	
3827.61	00 00	HFC를 함유한 혼합물	3827.61-0000	
3827.62	00 00		3827.62-0000	
3827.63	00 00		3827.63-0000	
3827.64	00 00		3827.64-0000	
3827.65	00 00		3827.65-0000	
3925.20	00	플라스틱제의 문, 창과 이들의 틀	3925.20-0000	
3926.90	10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버킷 또는 원통형 용기)	ex 3926.90-9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은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철강제 용기에 수용된 채로 거래되는 경우 그 철강의 비중에 따른 추가관세가 포함되며, 철강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에 계기된 세율이나 상호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그룹에는 대체로 철강제 용기를 포함해 견고한 포장을 사용하기 적합한 소매용 물품이 포함된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물품은 HTSUS 제2106.90.9998호의 ‘그 밖의 조제 식료품’과 제3824.99.9397호의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이다. HS 품목분류표 관점에서 소호 제2106.90호는 제21류의 잔여 소호이므로 그 자체로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또한 이 소호에서 미국 HTSUS의 세분류 체계와 한국 HSK의 세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품목코드 간 일대일 매칭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2106.90호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HSK 코드 전체가 HTSUS 제2106.90.9998호와 연계되고 있으나 실제로 수입조정 대상이 되는 품목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국 HTSUS 세분류 코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제3824.99호에서도 동일하다.

□ 그 밖의 철강재료를 사용한 제품, 기구, 기계류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32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4.10	10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7614.10-0000	
8202.39	00 40	원형톱날(다이아몬드 톱날 코어)	ex 8202.39-9000	
8203.40	60	파이프커파, 볼트크로퍼, 천공편치(기타)	ex 8203.40-1000 ex 8203.40-2000 ex 8203.40-3000 ex 8203.40-9000	
8205.59	55	그 밖의 수공구	ex 8205.59-1000 ex 8205.59-3000 ex 8205.59-9000	
8205.70	00	바이스,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것	8205.70-1000 8205.70-2000 8205.70-9000	
8207.20	00 70	압출용, 인발용 다이(부분품)	ex 8207.20-1000 ex 8207.20-2000	
8207.30	60 62	프레싱, 스탬핑, 펀칭	ex 8207.30-0000	
8207.30	60 95	공구	ex 8207.30-0000	
8211.10	00	칼 세트	8211.10-0000	
8211.91	1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91-0000	
8211.91	20			
8211.91	25			
8211.91	30			
8211.91	40			
8211.91	50			
8211.91	80			
8211.92	2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211.92-0000	
8211.92	40			
8211.92	60			
8211.92	90			
8211.93	00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	8211.93-0000	
8211.94	10	칼날	8211.94-0000	
8211.94	50			
8211.95	10	비금속으로 만든 손잡이	8211.95-0000	
8211.95	50			
8211.95	90			
8215.10	00	스푼 등의 세트(귀금속 도금)	8215.1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215.20	00	스푼 등의 세트(기타)	8215.20-0000		
8215.91	30	스푼, 포크, 국자 등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215.91-0000		
8215.91	60				
8215.91	90				
8215.99	01		포크	8215.99-2000	
8215.99	05				
8215.99	10				
8215.99	15				
8215.99	20				
8215.99	22				
8215.99	24				
8215.99	26				
8215.99	30		스푼과 국자	8215.99-1000	
8215.99	35			ex 8215.99-3000	
8215.99	40				
8215.99	45				
8215.99	50	기타	ex 8215.99-3000 8215.99-5000 8215.99-9000		
8302.10	60	힌지[hinge(경첩)](자동차용 제외)	ex 8302.10-0000	○	
8302.41	30	건물용으로 적합한 부착구	ex 8302.41-1000		
			ex 8302.41-9000		
8302.41	60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ex 8302.41-1000 ex 8302.41-9000		
8302.42	30	가구에 적합한 부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ex 8302.42-0000	○	
8302.49	60	기타의 부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ex 8302.49-1000 ex 8302.49-9000	○	
8305.20	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305.20-0000		
8307.10	60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	ex 8307.10-0000		
8401.40	00 00	원자로 부분품	8401.40-0000		
8403.10	00	중앙난방용 보일러	8403.10-1000 8403.10-3000 8403.10-9000		
8406.90	40 00	증기터빈 부분품(블레이드, 고정자 및 회전자)	ex 8406.90-1000 ex 8406.90-9000		
8407.21	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아웃보드 모터)	8407.2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07.90	10	그 밖의 불꽃점화식	농업기계용		8407.90-1000	
8407.90	90	피스톤 내연기관	기타		8407.90-9000	
8408.20	10	제87류 차량용 디젤엔진(농업용 트랙터용)			8408.20-1000	
8408.20	90	제87류 차량용 디젤엔진(기타)			8408.20-2000 8408.20-3000 8408.20-4000 8408.20-5000	
8409.91	50	불꽃점화식 엔진 부분품	로드 트랙터, 버스, 승용차, 화물차용	ex	8409.91-1000	
8409.91	92		선박 추진용	ex ex	8409.91-2000 8409.91-9000	
8409.91	99		기타	ex	8409.91-9000	
8409.99	91	압축점화식 엔진 부분품	로드 트랙터, 버스, 승용차, 화물차용	ex	8409.99-7000	
8409.99	92		선박 추진용	ex ex ex	8409.99-8010 8409.99-8020 8409.99-8030	
8409.99	99		기타	ex ex ex ex ex ex	8409.99-4010 8409.99-4090 8409.99-5000 8409.99-6000 8409.99-7000 8409.99-9000	
8410.90	00 00	수력터빈 등의 부분품			8410.90-1010 8410.90-1090 8410.90-9010 8410.90-9090	
8411.81	80	출력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항공기용 제외)			8411.81-9010 8411.81-9090	
8412.21	00	유압엔진	리니어액팅식		8412.21-1000 8412.21-9000	○
8412.29	80		기타(선박용 하이드로젯 제외)	ex	8412.29-0000	○
8412.90	90 70	부분품	풍력터빈 블레이드	ex	8412.90-9000	
8412.90	90 75		풍력터빈 허브	ex	8412.90-9000	
8413.81	00	그 밖의 펌프			8413.81-1000 8413.81-2000 8413.81-9000	○
8413.91	90 55	유체 파워 펌프의 부분품		ex ex ex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8413.91-5000	
				ex 8413.91-9000	
8413.91	90 60			ex 8413.91-2000	○
				ex 8413.91-3000	
				ex 8413.91-4000	
				ex 8413.91-5000	
				ex 8413.91-9000	
8413.91	90 96	그 밖의 부분품		ex 8413.91-2000	○
				ex 8413.91-3000	
				ex 8413.91-4000	
				ex 8413.91-5000	
				ex 8413.91-9000	
8414.30	40	냉동설비용 기체압축기(1/4마력 이하)		ex 8414.30-1000	○
8414.80	16	그 밖의 기체압축기(터보차저 제외)		ex 8414.80-9211	○
				ex 8414.80-9219	
				ex 8414.80-9220	
				ex 8414.80-9230	
8414.90	30	압축기 부분품	제8414.40호 물품의 고정자와 회전자	ex 8414.90-9010	○
8414.90	41		기타	ex 8414.90-9010	○
				ex 8414.90-9020	
				ex 8414.90-9090	
8415.10	3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8415.10-1010	
8415.10	60	공기조절기		8415.10-1020	○
8415.10	90			8415.10-2010	○
				8415.10-2020	
				8415.10-9010	
				8415.10-9020	
8415.81	01	냉각유닛과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8415.81-0000	○
8415.82	01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		8415.82-0000	○
8415.83	00	기타의 공기조절기		8415.83-0000	○
8415.90	40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8415.90-0000	○
8415.90	80				
8417.90	00 00	노와 오븐의 부분품		8417.90-0000	
8418.10	00	일체형 냉장 냉동고		8418.10-1010	○
				8418.10-1020	
				8418.10-1030	
				8418.10-9000	
8418.21	00	압축식 가정형 냉장고		8418.21-1000	
				8418.21-2000	
				8418.21-3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18.29	20	그 밖의 냉장고(전기식의 흡수식 제외)	8418.29-9000	
8418.30	00	체스트형 냉동고	8418.30-0000	○
8418.40	00	직립형 냉동고	8418.40-0000	○
8418.99	40	냉장기구의 부분품(도어 어셈블리)	ex 8418.99-1000 ex 8418.99-9000	
8419.81	50	쿠킹 스토브, 레인지와 오븐	ex 8419.81-0000	○
8421.29	00	그 밖의 액체 여과기	8421.29-1000 8421.29-2010 8421.29-2090 8421.29-3010 8421.29-3090 8421.29-4000 8421.29-9010 8421.29-9090	○
8422.11	00	가정형 접시세척기	8422.11-0000	
8424.10	00 00	소화기	8424.10-0000	○
8424.89	90	그 밖의 분사, 분무용 기기	8424.89-1000 8424.89-9000	
8425.42	00	그 밖의 잭과 호이스트	8425.42-1000 8425.42-2000	○
8426.20	00	타워크레인	8426.20-0000	
8426.99	00	그 밖의 크레인	8426.99-1000 8426.99-9000	○
8427.10	4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8427.10-1010	
8427.10	80		8427.10-1020 8427.10-2010 8427.10-2020 8427.10-3000	
8427.20	40	그 밖의 자주식 작업트럭	8427.20-1011	
8427.20	80		8427.20-1012 8427.20-1021 8427.20-1022 8427.20-9000	
8427.90	00		8427.90-1000 8427.90-9000	
8428.32	00	버킷형 컨베이어	8428.32-0000	
8428.33	00	벨트형 컨베이어	8428.33-1010 8428.33-1020 8428.33-2000	○
8428.39	00	기타 컨베이어	8428.39-000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28.60	00	텔레페릭	8428.60-0000	
8428.70	00	산업용 로봇	8428.70-1000 8428.70-2000 8428.70-9000	
8428.90	03	그 밖의 권양, 하역, 양하, 적하용 기계	8428.90-1000 8428.90-2000 8428.90-3000 8428.90-9000	○
8429.11	00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1000 8429.11-2000	
8429.19	00		8429.19-0000	
8429.20	00	그레이더, 레벨러	8429.20-0000	
8429.30	00	스크레이퍼	8429.30-0000	
8429.40	00	탐핑머신	8429.40-1000 8429.40-2000	
8429.51	10	메커니컬, 셔블, 셔블로더	8429.51-1011	
8429.51	50	엑스카베이터, 셔블로더	8429.51-1012 8429.51-1021 8429.51-1022 8429.51-1031 8429.51-1032 8429.51-1091 8429.51-1092 8429.51-9000	
8429.52	10		8429.52-1011	
8429.52	50	360도 회전 상부구조를 가진 것	8429.52-1012 8429.52-1021 8429.52-1022 8429.52-1090 8429.52-9000	
8429.59	10		8429.59-0000	
8429.59	50	기타		
8431.20	00	제8427호 기계의 부분품	8431.20-0000	
8431.31	00	제8428호 기계의 부분품	8431.31-0000	
8431.39	00		8431.39-0000	
8431.41	00	제8426호, 제8429호, 제8430호 기계의 부분품	8431.41-1000 8431.41-9000	
8431.42	00		8431.42-0000	
8431.43	40		8431.43-0000	
8431.43	8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31.49	10				8431.49-1000	
8431.49	90				8431.49-2000 8431.49-9000	
8432.10	00	플라우(쟁기)			8432.10-0000	
8432.90	00	제8432호 기계의 부분품			8432.90-1000 8432.90-2000 8432.90-9000	
8433.11	00	잔디깎기			8433.11-0000	
8433.20	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			8433.20-0000	
8433.51	00	수확, 탈곡 겸용기			8433.51-0000	
8433.59	00	그 밖의 수확기			8433.59-0000	
8433.90	10	제8433호 기계의 부분품			8433.90-1000	
8433.90	50				8433.90-2000 8433.90-9000	
8443.16	00 00	곡면 인쇄용 기계			8443.16-0000	
8450.11	00	완전자동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이하)			8450-11-0000	
8450.20	00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초과)			8450-20-0000	
8451.21	00	건조기			8451.21-0000	
8451.29	00				8451.29-0000	
8454.20	00 10	잉곳용 주형	철강 잉곳용	ex	8454.20-0000	
8454.20	00 60		기타	ex	8454.20-0000	
8455.30	00	압력주조기			8455.30-1000 8455.30-2000 8455.30-9000	
8455.90	40 00	제8455호 기계용의 부분품			8455.90-0000	
8455.90	80 00					
8457.10	00	머시닝 센터			8457.10-4000 8457.10-9010 8457.10-9020 8457.10-9030 8457.10-9090	
8474.90	00	제8474호 기계의 부분품			8474.90-0000	
8477.10	30	사출성형기			8477.10-1000	
8477.10	40				8477.10-2000	
8477.10	90					
8477.90	25	제8477호 기계의	베이스 베드, ram 등	ex	8477.90-0000	
8477.90	86 01	부분품	사출성형기의 것	ex	8477.90-0000	
8479.89	55	그 밖의 고유기능을	쓰레기 압축기	ex	8479.89-109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가진 기계	ex	8479.89-9099	
8479.89	65	전동기가 내장된 그 밖의 전기기계식 기기	ex	8479.89-1090	○
			ex	8479.89-9099	
8479.90	45	제8479호 기계의 부분품	ex	8479.90-1020	○
			ex	8479.90-9090	
8479.90	55		ex	8479.90-1020	○
			ex	8479.90-9090	
8479.90	65		ex	8479.90-1020	○
			ex	8479.90-9090	
8479.90	75		ex	8479.90-1020	○
			ex	8479.90-9090	
8479.90	85		ex	8479.90-1020	○
			ex	8479.90-9090	
8479.90	95	기타		8479.90-9010	○
				8479.90-9020	
				8479.90-9030	
				8479.90-9040	
				8479.90-9050	
				8479.90-9060	
				8479.90-9070	
				8479.90-9090	
8480.49	00 10	덕타일 주철관 원심주조용 금형	ex	8480.49-0000	
8480.71	80 45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ex	8480.71-0000	
8480.71	80 60		ex	8480.71-0000	
8480.79	90 10		ex	8480.79-0000	
8482.10	50 04	볼 베어링(샤프트 일체형 제외)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08	쓰러스트 베어링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12	리니어 베어링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16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24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28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32	단열베어링(최대 용량)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36	외경 9mm 이하	ex	8482.1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82.10	50 52		외경 52~100mm	ex	8482.10-2000	
8482.10	50 56		외경 100mm 초과	ex	8482.10-9000	
8482.10	50 60		복열베어링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64		기타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10	50 68		비 radial 베어링	ex	8482.10-2000	
				ex	8482.10-9000	
8482.20	00 64	원추형 롤러베어링	외경 203~305mm	ex	8482.20-0000	
8482.20	00 67		외경 305mm 초과	ex	8482.20-0000	
8482.20	00 90		콘 어셈블리	ex	8482.20-0000	
8482.99	05	베어링 부분품	링 또는 레이스	ex	8482.99-0000	
8482.99	15			ex	8482.99-0000	
8482.99	25			ex	8482.99-0000	
8482.99	35		기타	ex	8482.99-0000	
8482.99	45			ex	8482.99-0000	
8482.99	65			ex	8482.99-0000	
8483.10	10 10	전동축, 크랭크	제87류 차량용 캠샤프트	ex	8483.10-9010	○
8483.10	10 50		기타의 캠 샤프트	ex	8483.10-1000	○
				ex	8483.10-9090	
8483.10	50		그 밖의 전동축	ex	8483.10-1000	○
				ex	8483.10-9010	
				ex	8483.10-9090	
8483.20	40	베어링 하우징(볼 베어링을 갖춘 것)	플랜지, 행거 유닛		8483.20-1000	
8483.20	80		기타		8483.20-9000	
8483.30	40	베어링 하우징(볼 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것)	플랜지, 행거 유닛		8483.30-1000	○
8483.30	80		기타		8483.30-9000	
8483.40	10	기어와 기어링	토크 컨버터	ex	8483.40-1090	○
				ex	8483.40-9090	
8483.40	50 20		기어링 등	ex	8483.40-9020	○
				ex	8483.40-9030	
				ex	8483.40-9090	
8483.40	90			ex	8483.40-1090	○
				ex	8483.40-9010	
				ex	8483.40-9090	
8483.50	60	플라이 휠과 폴리	플라이 휠	ex	8483.50-1000	○
				ex	8483.50-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83.50	90	기타	ex ex	8483.50-1000 8483.50-9000	○
8483.60	40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 등	클러치와 유니버설 조인트	8483.60-1000 8483.60-2000	○
8483.60	80	기타		8483.60-9000	
8483.90	20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부분품	플랜지, 카트리지 및 행거의 부분품	ex 8483.90-1000 ex 8483.90-2000 ex 8483.90-9000	○
8483.90	30	기타		ex 8483.90-1000 ex 8483.90-2000 ex 8483.90-9000	○
8483.90	50	기어링 부분품		ex 8483.90-1000 ex 8483.90-2000 ex 8483.90-9000	○
8483.90	70	제8483.20호 물품의 부분품		ex 8483.90-1000 ex 8483.90-2000 ex 8483.90-9000	
8483.90	80	기타 부분품		ex 8483.90-1000 ex 8483.90-2000 ex 8483.90-9000	○
8501.53	40	출력 75킬로와트 초과의 다상 교류 전동기	75~149.2킬로와트 미만의 것	8501.53-1010 8501.53-1090	○
8501.53	60	전동기	149.2~150킬로 와트의 것	8501.53-2000 8501.53-4000	○
8501.53	80	기타			
8501.64	01 10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용 교류발전기		ex 8501.64-0000	
8502.31	00 00	풍력 발전세트		8502.31-1000 8502.31-2000 8502.31-4000	○
8503.00	35	제8501호 물품의 고정자와 회전자	출력 18.65와트 미만의 전동기용	ex 8503.00-1000	
8503.00	45		항공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기용	ex 8503.00-2090	
8503.00	65		기타	ex 8503.00-1000 ex 8503.00-2010 ex 8503.00-2090	
8503.00	75	그 밖의 부분품(발전기, 전동기, 발전세트)	출력 18.65와트 미만의 전동기용	ex 8503.00-1000	
8503.00	90		항공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기용	ex 8503.00-209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503.00	95	기타	ex	8503.00-1000		
			ex	8503.00-2010		
			ex	8503.00-2090		
			ex	8503.00-3000		
8504.23	00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초과 유입식 변압기		8504.23-0000		
8504.33	00	용량 16~500킬로볼트 암페어의 기타 변압기		8504.33-1000	○	
				8504.33-2000		
				8504.33-9010		
				8504.33-9020		
		8504.33-9040				
8504.90	96 34	변압기 부분품	코어에 장착하기 위한 접착층	ex	8504.90-9000	
8504.90	96 38		변압기에 장착하기 위한 코어	ex	8504.90-9000	
8504.90	96 42			ex	8504.90-9000	
8509.80	20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8504.80-4000	
8514.20	4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ex	8514.20-1000	○
8514.20	60			ex	8514.20-2000	
				ex	8414.20-3000	
				ex	8514.20-9000	
8516.29	00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기			8516.29-0000	
8516.60	40	그 밖의 오븐, 쿠키, 조리판 ... <후략>			8516.60-1000	
8516.60	60				8516.60-2000	
					8516.60-9000	
8601.10	00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이나 축전지로 구동)			8601.10-0000	
8601.20	00				8601.20-0000	
8602.10	00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			8602.10-0000	
8602.90	00				8602.90-0000	
8603.10	00	철도용 객차와 화차(자주식)			8603.10-1000	
					8603.10-2000	
8603.90	00				8603.90-1000	
					8603.90-2000	
8604.00	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8604.00-4000	
					8604.00-9000	
8605.00	00	철도용 객차(비자주식)			8605.00-1000	
					8605.00-2000	
					8605.00-9000	
8607.11	00	철도용 기관차나	구동식 보기		8607.11-0000	
8607.19	03 00	차량의 부분품	차축		8607.19-1000	
8607.19	06		차축의 부분품		8607.19-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607.19	12	차륜		8607.19-2000	
8607.19	15	차륜의 부분품		8607.19-2000	
8607.19	90	그밖의 차축, 차륜의 부분품	ex	8607.19-3000	
			ex	8607.19-9000	
8607.21	50	에어브레이크	ex	8607.21-0000	
8607.30	10 10	흑과 그 밖의 연결장치 등		8607.30-1000	
8607.30	10 50			8607.30-2000	
8607.30	10 90			8607.30-3000	
8607.30	50			8607.30-9000	
8607.91	00	그 밖의 기관차 부분품		8607.91-0000	
8607.99	50	기타	ex	8607.99-0000	
8609.00	00	컨테이너		8609.00-1000	
				8609.00-2000	
				8609.00-3000	
				8609.00-4000	
				8609.00-5000	
				8609.00-9000	
8701.10	01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701.10-0000	
8701.21	00 80	로드 트랙터(중고)	디젤 엔진	8701.21-2000	
8701.22	00 80		디젤 하이브리드	8701.22-2000	
8701.23	00 80		가솔린 하이브리드	8701.23-2000	
8701.24	00 80		전기모터	8701.24-2000	
8701.29	00 80		기타	8701.29-2000	
8701.30	10	무한궤도식 트랙터		8701.30-0000	
8701.30	50				
8701.91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18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1-2000	
8701.91	50		기타	8701.91-1010	
				8701.91-1020	
				8701.91-9000	
8701.92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2-2000	
8701.92	50		기타	8701.92-1010	
				8701.92-1020	
				8701.92-9000	
8701.93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3-2000	
8701.93	50		기타	8701.93-1010	
				8701.93-1020	
				8701.93-9000	
8701.94	10	그 밖의 트랙터	농업용	8701.94-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701.94	50	(동력 75킬로와트 초과 기타 130킬로와트 이하)	8701.94-1010 8701.94-1020 8701.94-9000	
8701.95	10	그 밖의 트랙터 농업용	8701.95-2000	
8701.95	50	(동력 130킬로와트 초과) 기타	8701.95-1010 8701.95-1020 8701.95-9000	
8702.10	31	디젤엔진만을 갖춘 것 16인승 이상	8702.10-2010 8702.10-2020 8702.10-3010 8702.10-3020	
8702.10	61	기타	8702.10-1010 8702.10-1020	
8703.10	10	설상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10-1000 8703.10-2000 8703.10-9000	
8703.10	50			
8703.21	01	실린더 용량 1,000cc 이하의 피스톤 엔진차량	8703.21-7000 8703.21-8000	
8705.10	00	기중기차	8705.10-1000 8705.10-2000 8705.10-9000	
8705.20	00	이동식 시추용 데릭차	8705.20-0000	
8705.90	00 10	이동 방사선차	ex 8705.90-9090	
8705.90	00 20	이동진료차	8705.90-9050	
8706.00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새시	ex 8706.00-1000	
8708.10	30	범퍼	ex 8708.10-0000	
8708.29	21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바디 스탬핑	ex 8708.29-0000	
8708.40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기어박스	ex 8708.40-0000	
8708.40	6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기어박스 부분품	ex 8708.40-0000	
8708.92	1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소음기와 배기관	ex 8708.92-0000	
8708.92	50	그 밖의 차량용의 소음기와 배기관	ex 8708.92-0000	
8708.92	6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소음기와 배기관 부분품	ex 8708.92-0000	
8708.92	75	그 밖의 차량용의 소음기와 배기관 부분품	ex 8708.92-0000	
8708.93	15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클러치	ex 8708.93-0000	
8708.93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클러치 부분품	ex 8708.93-0000	
8708.99	23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1010	
8708.99	81	제87류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1020 ex 8708.99-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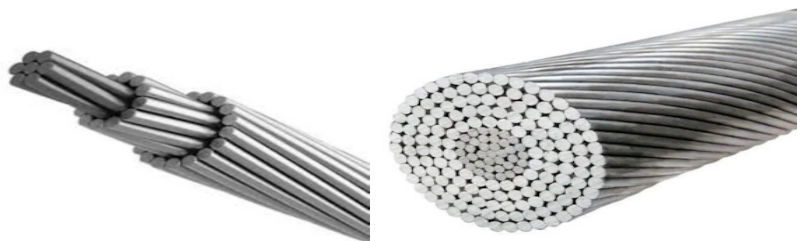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8708.99-1040	
			ex 8708.99-1050	
			ex 8708.99-9000	
8710.00	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8710.00-1000 8710.00-2000 8710.00-9000	
8711.30	00	실린더 용량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1000 8711.30-9000	
8711.50	00	실린더 용량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50-1000 8711.50-9000	
8711.60	00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8711.60-1000 8711.60-9000	
8714.10	00	모터사이클의 부분품	8714.10-1000 8714.10-9000	
8716.10	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	8716.10-0000	
8716.39	00	화물수송용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9-0000	
8716.80	10	그 밖의 차량	8716.80-1000	
8716.80	50		8716.80-2000 8716.80-3000 8716.80-9000	
8716.90	10	농장용 왜건과 카트의 부분품	ex 8716.90-9000	
8716.90	30	제8302호의 것을 제외한 카스터	ex 8716.90-1000 ex 8716.90-9000	
9401.71	00	프레임이 금속으로 속을 댄 것 된 그 밖의 의자	9401.71-1000 9401.71-9000	
9401.79	00	기타	9401.79-1000 9401.79-9000	
9403.10	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9403.10-0000	
9403.20	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00 9403.20-9000	○
9403.99	10	제9403호 가구의 부분품(목재로 만든 것 제외)	ex 9403.99-0000	
9403.99	20		ex 9403.99-0000	
9403.99	40		ex 9403.99-0000	
9403.99	90 10		ex 9403.99-0000	
9403.99	90 15		ex 9403.99-0000	
9403.99	90 20		ex 9403.99-0000	
9403.99	90 40		ex 9403.99-0000	
9403.99	90 45		ex 9403.99-0000	
9403.99	90 51		ex 9403.99-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9403.99	90 61		ex 9403.99-0000	
9406.20	00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으로 만든 것)	9406.20-0000	
9406.90	01	그 밖의 조립식 건축물	9406.90-1000 9406.90-2000 9406.90-3000 9406.90-9000	
9506.91	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506.91-0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도 역시 철강 재료의 비중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철강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에 계기된 세율이나 상호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그룹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HTSUS 제7614.10.10호의 물품이다. 여기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으로서 코어 부분인 철강이면서 연결구류가 장착되지 않은 제품이 포함된다. 수입조정 취지에서 보자면 이러한 물품은 코어의 철강 비중에 따라 50%의 추가관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해진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조정 조치에 따라 HTSUS 제7614.10.10호의 물품에는 이미 추가관세 50%가 부과된다. 즉, 철강을 기준으로 하든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든 이러한 물품에 적용되는 추가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 코드를 철강제품 수입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코어가 철강제인 알루미늄 연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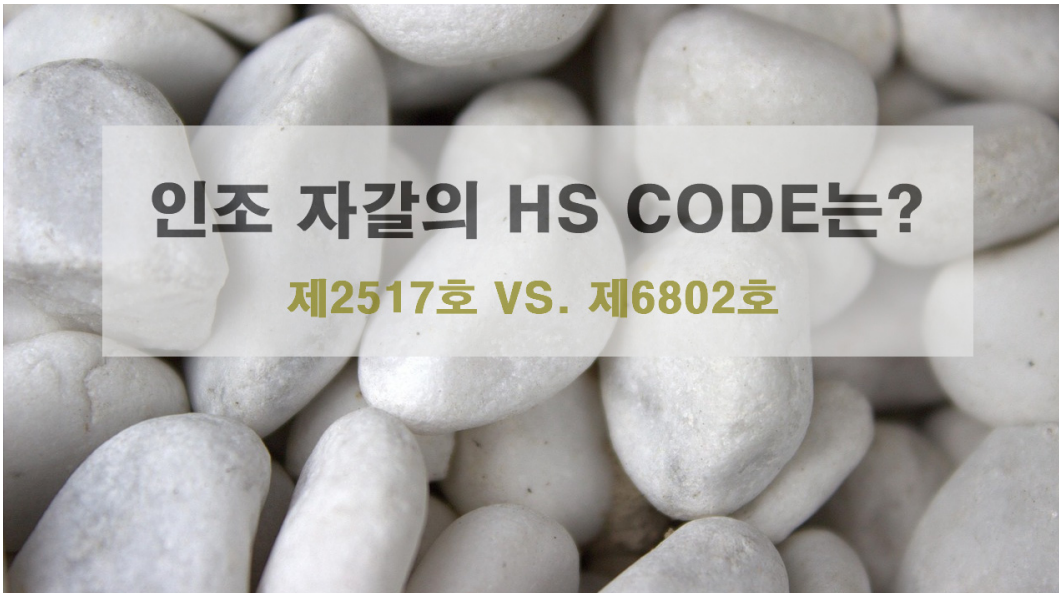


그 밖에도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 중 제8302호의 장·부착구, 제8483호의 전동 엘리먼트 등은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조정 조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석회암을 채취해 가공한 인조 자갈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자갈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재료 중 하나다. 하천변 산책로, 공사장 바닥, 조경용 바닥재 등 자갈은 어디에나 있어 ‘그냥 돌’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자갈은 단순히 땅에서 주워 쓰는 돌이 아니라,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도록 선별되고, 용도에 맞게 가공돼 거래되는 전형적인 산업 자재이기도 하다. 특히 건설과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대표 골재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석회암을 채취해 만든 회백색 자갈 모양의 돌로 ‘자갈·왕자갈·쇄석(碎石) 등’에 해당하는 제2517.49-2000호로 신고했다.

본 물품은 석회암을 채취해, 작은 크기로 분쇄 후 모굴림 작업을 통해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것으로 건축용 자재로 사용한다.

제2517호는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벨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갈(pebble)·왕자갈(gravel)·쇄석(碎石: broken or crushed stone)(서로 다른 종류의 석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또한, **그대로나 잘게 부수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진 돌조각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축과 해체 잔해의 분리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작은 알갱이(granule)·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가 포함되며;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 작은 알갱이(granule)는 제68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석회암을 분쇄해 모굴립 작업을 통해 인공적으로 자갈 형태로 만든 본 물품은 제251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봤다.

제6802호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석공·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 즉: ... <중략> ... (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용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부싱해머·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석회암을 작은 크기로 파쇄한 후 모굴립 작업을 통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연마해 천연 자갈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인조 자갈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2-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EBBLE STONE	2517.49-2000 (FAS 0%)	Other calcareous stone	6802.92-0000 (FAS 0%)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발간 예정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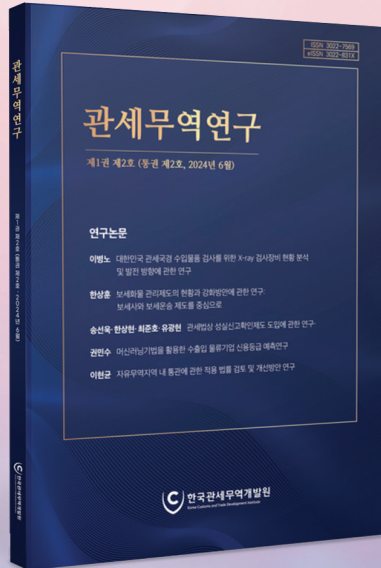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